

의안번호	2205389
의 회 인	이철규 의원
회 답 일	2025. 2. 4.
추계번호	24A4988

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9조의2(국가핵심기술 해당 여부 판정 등)	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등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직권으로 해당 기관에 제1항에 따른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음(제2항)	재량규정
2	안 제9조의3(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의 등록 등)	- 기업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가핵심기술 관련 사항의 등록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함.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음(제1항) -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 및 제2항에 따른 등록 말소와 관련하여 기술안보센터로 하여금 검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대상기관의 장에게 자료제출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. 이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대상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함(제3항)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등 근거 규정
1	안 제9조의2(국가핵심기술 해당 여부 판정 등)	제1호: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0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0억원 미만인 경우
2	안 제9조의3(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의 등록 등)	

2. 상세 사유

- 안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기관에 국가핵심기술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

지하고, 안 제9조의3에 따라 기업·연구기관·전문기관·대학 등이 국가핵심기술 관련 사항을 등록하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
- 산업통상자원부 제출자료에 따르면, 2024년 7월 기준으로 국가핵심기술로 판정된 기술은 76개(124개 기관¹⁾)이며, 현재 국가핵심기술로 판정된 기술을 보유한 기관이 아니지만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기관은 100여개임
- 개정안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관이 국가핵심기술 관련 사항을 등록하고, 100여개 기관이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지에 따라 국가핵심기술 판정 신청을 할 경우 기술안보센터의 검토가 이루어지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다만, 개정안과 관련하여 현재 산업통상자원부는 “산업기술보안기반구축” 사업을 통해 산업기술보호 정책추진기구를 운영하고,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술보호 역량강화를 지원하고 있어 예상되는 비용이 한시적이고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
 - 동 사업의 2025년 예산의 구체적인 내역을 보면, 국가핵심기술관리 강화(1,330백만원), 기술보호역량 강화(2,252백만원), 정보보안비(471백만원), 무역안보기반조성(230백만원) 등임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추계세제총괄과	윤주철	권아영

1)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관 수는 2024년 6월 기준임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윤주철	02-6788-4655	yjc@nabo.go.kr